

수원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16116(본소), 2024나16123(반소) 판결

[청구이의 · 연대보증채무금 청구]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16116(본소), 2024나16123(반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2 선고 2023가합401410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¹.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식회사 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덕희

변론 종결2024. 9. 13.

판결 선고2024. 11. 8.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2. 선고 2023가합401410(본소),

2023가합401427(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5. 29.자

2014차2068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피고(반소원고)에게,

1) 원고(반소피고) E, F, G은 연대하여 별지 표 순번 1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돈 중 같은 순번 원금란 기재 돈에 대하여 202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반소피고) A, B, C, D, H, I, J, K, L, M, N는 원고(반소피고) E, F, G과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별지 표 순번 2 내지 12의 각 원고(반소피고)별 합계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 중 해당 순번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나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라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 대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반소1)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9면 8행부터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 H 등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Y 부동산강제경매), 2024. 4. 9. 위 경매절차에서 총 613,800,815원을 배당받았다.』

○ 9면 12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은 피고(주식회사 O)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차용금 3억 5,000만 원, 위약금 10억 원 합계 1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8. 18.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가합102630호로 1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4. 1. 26. '이 사건 조합은 피고(주식회사 O)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4나13087호로 계류 중이다.』

○ 9면 20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9호증"을 추가한다.

○ 10면 17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U이 조합장에서 사임한 후 피고 이사회는 R를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U의 직무를 정지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② 감사가 아닌 이사회에서 R를 직무대리로 선임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던 R가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는 효력이 없다. 나아가 대표권이 없는 R가 소집한 이사회에서 선출된 P은 적법하게 선임된 조합장이 아닌데다 P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조합의 임원변경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P이 2006년경부터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할 자격 없이 작성해온 각종 문서는 효력이 없다.』

○ 10면 20행과 21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이 사건 조합임원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이 사건 조합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조합임원은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와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파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합임원은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 11면 16행의 "연대보증하였으므로,"를 "연대보증하였다."로 고치고, 11면 16행의 "원고들은"부터 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13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이행각서가 무효라 해도,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3면 13행의 "수액배당금"을 "수익배당금"으로 고친다.

○ 15면 7행의 "이 사건 조합임원의 연대보증계약 체결부분"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확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이 사건 이행각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이사들 연대보증으로 날인 후 이행키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행의 조건을 기재한 하단에 이 사건 조합임원 등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임원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15면 18행의 "지연손해금을"을 "연 20%의 이자를"로 고친다.

○ 16면 5행의 "배당받았다는"부터 "같다"까지를 "배당받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Y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24. 4. 9. 총 613,800,815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로 고친다.

○ 16면 8행의 "위 변제금은"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의 각 변제금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대여원금 250,000,000원의 지급일인 2004. 12.

17.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우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X 사건의 배당금 344,403,490원은 2004. 12. 17.부터 2021. 12. 20.까지의 이자 850,547,945원[= 원금 250,000,000원 $\times$ {17 + 4/365} $\times$ 연 20%,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총당되고, 다음 같은 법원 Y 사건의 배당금 613,800,815원은 잔존 이자 506,144,455원(= 850,547,945원 - 344,403,490원) 및 2021. 12. 21.부터 배당일 2024. 4. 9.까지의 이자 115,205,479원[= 원금 250,000,000원 $\times$ {2 + 111/365} $\times$ 연 20%]에 전부 총당되므로, 이 사건 주채무는 ① 원금 250,000,000원, ② 2024. 4. 9.까지의 잔존 이자 7,549,119원(= 506,144,455원 + 115,205,479원 - 613,800,815원), ③ 2024. 4. 10.부터 연 20%의 이자가 남게 된다.』

○ 17면 13행의 "대여금 및 위약금" 다음에 ",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금원"을 추가하고, 17면 16행의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금액에는"을 "이 사건 이행각서 내지 이 사건 확약서상의 금원에는"으로 고친다.

○ 17면 21행부터 22행까지의 "P이 2006년부터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 보낸 문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를 "P이 이 사건 조합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보낸 행위는 조합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라고 고친다.

○ 18면 2행의 "앞서 본 사정에다가" 다음부터 13행까지를 다음으로 고친다.

『이 사건 조합 정관은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조합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보궐 선임하고(제15조 제2항),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5조 제4항), U이 조합장직을 사임한 후 R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되었는바, 이로써 R는 이사회에 보궐 선임을 통해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적법한 대표권을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 당시 이미 사임한 U의 직무를 정지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여 R의 위 선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조합 정관은 보궐 선임된 임원이 사임하여 궐위된 경우 재차 임원을 보궐 선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들은 P이 속초시장으로부터 임원변경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조합장은 관련 법령 내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되면 이로써 대표권을 보유하는 것이지, 시장·군수의 인가를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대표권을 가진다고 볼 것은 아닌 점, P의 조합장 임기는 전임 조합장인 U의 임기 만료일인 2006. 11. 21.이 경과하면서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조합은 이후 조합장을 선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임원들의 임기도 그 무렵 만료된 점, P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P은 2005. 8. 25.경 조합장으로 선임된 이후 2017. 11. 16.경 사망하기 전까지 별다른 다툼 없이 조합장으로 활동하였고, 관련사건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P이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P은 이사회회의 보궐 선임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장으로 선임되었고,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19면 6행부터 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잔존 주채무가 ① 원금 250,000,000원, ② 2024. 4. 9.까지의 잔존 이자 7,549,119원, ③ 2024. 4. 10.부터의 연 20%의 이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 E, F, G은 연대보증인들로서 위 채무 전부를, 나머지 원고들은 연대보증인들의 상속인들로서 각 상속채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표와 같은바2),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같은 표의 각 원고별 순번 합계란 기재 금원 및 그중 각 원고별 순번 원금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24.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3) 』

2.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상기

판사장지용

판사이영미

별지

1) 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의 주위적 청구취지는 원금 및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고, 예비적 청구취지는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원고 A의 경우

- 채무원금 250,000,000원 중 83,333,333원(= 250,000,000원 × 3/9, 버림, 이하 계산 모두 버림으로 처리).

- 잔존 지연손해금 7,549,119원 중 2,516,373원(= 7,549,119원 × 3/9).

원고 B, C, D의 경우

- 채무원금 250,000,000원 중 55,555,555원(= 250,000,000원 중 × 2/9).

- 잔존 지연손해금 7,549,119원 중 1,677,582원(= 7,549,119원 × 2/9).

원고 H의 경우

- 채무원금 250,000,000원 중 50,000,000원(= 250,000,000원 × 3/15).

- 잔존 지연손해금 7,549,119원 중 1,509,823원(= 7,549,119원 × 3/15).

원고 I, J, K, L, M, N의 경우

- 채무원금 250,000,000원 중 33,333,333원(= 250,000,000원 × 2/15).

- 잔존 지연손해금 7,549,119원 중 1,006,549원(= 7,549,119원 × 2/15).

3)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일부 중복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소멸시효 완성도 임박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